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51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: 박정현·복기왕·박수현

장철민 · 김준혁 · 조승래

김영환 · 김성회 · 송재봉

강준현 · 채현일 · 염태영

서미화 · 이광희 · 용혜인

윤종군 • 정혜경 • 전종덕

장종태 · 양부남 · 이수진

위성곤 • 박용갑 • 허성무

황명선 • 이재강 • 신정훈

전진숙 • 이기헌 • 박주민

유호중 의원(31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 인구가 빠르게 도시로 유출되면서 도시는 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.

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 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으로 추진되었고, 물질적·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음.

이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법적·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읍·면·동 또는 통·리 등 지역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"주민등"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마을공동체는 주민 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성·독립성·책임성을 갖추어 모든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,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(안 제3조).
- 라.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계획을,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

록 함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).

- 마.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,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.
- 사.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, 지원사업, 전문인력,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·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,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기금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).
- 자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유·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·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).
- 차.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5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주민등"이란 읍·면·동 또는 통·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의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마을공동체"란 주민등이 사회적·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,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.
- 3. "마을공동체 활동"이란 주민등이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- 4. "지원사업"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에 행정적 •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체는 이 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주민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
 - 2. 모든 주민등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다양성·독립성·책임성을 갖출 것
 - 3. 모든 주민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닐 것
 - 4.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
 - 5. 다른 마을공동체 및 유관 행정기관 등과 상호협력할 것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 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,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며,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5조(선거운동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과 그에 소속된 구성원은 그 단체 또는 기관의 명의 또는 그

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(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

- 제7조(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)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규정, 정관 등으로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역계획의 수립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5년마다 시·군·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(이하 "시·군·구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(이하 "시·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시・군・구계획 및 시・도계획(이하 "지역계획"이라 한다)에는
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
- 2.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
- 3.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 · 협력 방안
- 4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
- 5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- 6.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
- ④ 시·군·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수립한 마을공동체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, 시·도계획은 시·군·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- ⑤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10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⑥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시· 군·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·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 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각각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지역계획·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9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공동체

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- 2.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
- 3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- 4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시책사업
- 5.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방안
- 6.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, 제11조에 따른 마을 공동체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소관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

제10조(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)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각각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둔

다.

-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- 1. 지역계획의 수립 · 변경
- 2.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연계와 협력방안
- 3.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4. 제13조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운영
- 5.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- ③ 지역위원회는 주민등과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(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)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
 - 2.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·조정
 - 3.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·조정
 - 4. 제14조에 따른 중앙지원기관의 운영

- 5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- 6.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- ③ 중앙위원회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전담부서의 설치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총괄·조정하고 제9조의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과 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의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.
- 제13조(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(이하 "지역지원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지역계획 수립의 지원 및 자문
 - 2. 마을공동체 기초조사와 지원정책의 연구 및 분석
 - 3. 마을공동체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·시행
 - 4. 주민등, 공무원, 제18조의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 - 5. 마을공동체 활동의 인식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
 - 6. 마을공동체 간 연계ㆍ협력 및 협의회 설립 등 네트워크 구축 지

워

- 7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지 원기관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지역지 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의 지역지원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역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14조(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(이하 "중앙지원기 관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
 - 2.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
 - 3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사·연구 및 분석
 - 4. 전문인력, 공무원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
 - 5. 마을공동체 관련 정보의 수집 · 가공 및 제공
 - 6. 지역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
 - 7. 마을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

- 8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중앙지원기관의 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및 지원

- 제15조(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) ① 마을공동체는 제7조에 따른 마을공동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사회에 추진 활동 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을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(마을공동체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8조의 지역계획 및 제9조의

-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7조(마을공동체 역량강화)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등이 학습공동체로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제1항에 따른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(이하 "전문인력"이라 한다)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
 - 2.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력은 해당지역의 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19조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9조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등록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전문인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장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

- 제19조(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공동체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, 마을공동체 지원사업, 마을공동체 전문인력, 마을공동체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마을공동체기금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조성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
-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- 3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4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2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5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고향사랑기금으로부 터의 전입금
- 6. 기금의 운용수익금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마을공동체지역기금(이하 "지역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- 제21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 - 1. 제7조의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원
 - 제13조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과 제14조의 마을공동체 중앙지 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
 - 3.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

- 4. 제25조의 마을공동체재단에 대한 출연 및 운영 지원
- 5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
- 6. 기금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2조(기금의 운영 및 관리)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와 같다.
 -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.
 - ③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·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·도지 사가 운영·관리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용·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위 원회 및 중앙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.
- 제2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④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, 투명성,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.
- ⑥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기금의 관리·운영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민간기금의 조성) 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 한 민간기금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민간기금은 제2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재단이 관리 · 운용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·법인·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민간기금은 제2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 - ⑤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- 제25조(마을공동체재단) ①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③ 마을공동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민간기금의 관리 · 운용
- 2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
- 3.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 거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마을공동체재단의 설립·운영, 지원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마을공동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6조(마을공동체의 국유·공유재산 활용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그 밖 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·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 료·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 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유휴 또는 저활용된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,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용·수익 또는 대부 신청인에 우선할 수 있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·공유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·공유재산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

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④ 제2항의 유휴 또는 저활용된 국유·공유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국유·공유 재산 등의 현황파악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) ① 국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또는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칙

- 제28조(자료제출 요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9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 원기관이 아닌 자는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과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7장 벌칙

- 제30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31조(벌칙) 제5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.
- 제32조(과태료) ① 제29조를 위반하여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